사진가 이시우 국가보안법사건 (2007년)

1) 당시 상황

사진가로서의 저의 첫 번째 작업은 비무장지대(DMZ)였습니다. 1999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전시회를 열고 사진집도 발간했습니다. 같은 해에 두 번째 사진전을 열었는데 그 주제는 '대인지뢰'였습니다.

비무장지대, 민통선 문제를 다루면서 대인지뢰피해자, 고엽자피해자, 차별 속에 살아가는 민통선주민들 등 수많은 문제를 접하게 되며 이들을 관통하는 근본문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것이 「유엔사령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산문집『민통선 평화기행』으로 출간되기에 이르렀고 이 책은 2004년 문체부에서 선정한 한국의 책100권에 선정되었고 독일어판, 영어판 출간에 이어 일어판으로도 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997년 대인지뢰금지운동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계기로 발족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서 저는 실태조사를 담당하며 대인지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무작정 시작한 일이지만 대인지뢰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군사체계 전반에 대한 지식과 조사가 필요하며 그런 증거가 없으면 실태를 입증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군과 미군기지 전반에 대해 당시로서는 가장 폭넓은 자료조사와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유엔에 매년 보고되는『Landmine Monitor』에 수록되었습니다.

2004년 두 달간 유엔사령부에 대한 문제점을 끝까지 파헤쳐보자는 다짐으로 강화도-고성-부산-오키나와에 이르는 유엔사해체걷기명상을 하며 날마다 유엔사의 실상을 알리는 글을 써서 통일뉴스에 게재했습니다.

2) 사건 전개

저는 2004년 통일뉴스 기자자격으로 미대사관이 주최한 판문점행사에 초청되어 유엔사경비대 탄약고에 있는 화학무기 표식을 찍게 되었고 대사관과 미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허락을 받은 보도임에도 미군에선 난리가 났고 다음해 출입기자명단 제외를 의미하는 '바이올렛 시크릿'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 용산미군기지 대테러담당관과 오산미공군기지사령관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시우를 구속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증거목록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저를 도청·감청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것이 제 사건의 발단이라고 추정합니다.

2007년은 노무현대통령임기 마지막 해로 검찰은 일심회사건에 이어 제 사건을 터트렸습니다. 당시는 전작권환수가 예정되고 있었는데 유엔사령관이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엔사령부에 대해 집요하게 글을 써 오던 저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07년 6월에 전작권환수 관련된 중요결

정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기에 저는 그때까지 만이라도 유엔사의 실체를 폭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도피생활을 하며 수배 중에도 쉼 없이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투고했습니다. 2007년 4월 19일 거리에서 체포되는 순간 표현하지 못할 슬픔이 밀려왔고 그 이후로 48일 동안 곡기를 끊었습니다.
검찰공소장에는 저에 대해 국가보안법관련 28가지 혐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군사기밀누설, 유엔사해체주장 등으로 북한을 찬양고무한 점, 일본에서 친북인사들과 만나고 교류한 점,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 등 단체관련을 제외하고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민변변호인단에서는 제 사건이 국가보안법의 백화점이라고 비유했을 정도입니다.

3)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

재판부는 제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명백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요쟁점은 '국가기밀'의 범위였습니다. 재판부는 제가 촬영한 공군비행장이나 미군기지 대부분이 이미 민간 항공기나 구글어스 등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지 않는 외부에서 촬영된 것이므로 '기밀'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기밀의 보호는 군부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정보 또한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내용이었기에 기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 촬영은 기자로서 화학무기 저장 의혹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지, 북한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나 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공개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제 표현활동이 '헌법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강연 내용이나 NLL, 유엔사해체 문제에 대한 저의 글들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견해"이며 "헌법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논의"라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내부체제를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미군과 경찰, 검찰이 한 예술가를 옥죔으로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던 시도는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4)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국가보안법 2조 적용의 편파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2023년 6월 28일 자유총연맹기념식, 8월 10일 유엔사간부초청간담회, 10월 4일 재향군인회 기념식에서 반국가세력이 유엔사해체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아래에서 제시하듯이 반국가단체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처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엔사의 반국가단체성은 70여년 동안 의심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무수한 국가보안법조작사건들과 비교됩니다. 국가보안법 2조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정부참칭'

『유엔사규정525-2』의 민사행정에 대한 정의에서 '유엔사'는 대성동에 대해 미국정부의 행정을 수립하는 군사실행기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영토일부에 미국정부의 행정을 수립했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참칭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황교안의 입장처럼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의 조건은 당연히 충족하며 소수설의 입장을 따르더라도 '유엔사'는 별개의 통치기구를 형성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현행 한국헌법상 대한민국영토이자 미국입장에서는 적대지역인 북한의 민사행정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지역에서 토착민간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외국정부가 행정, 입법 및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이라고 노골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미국이 주권정부를 세우는 행위를 민사행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유엔사'는 헌법3조를 적극적으로 위반할 목적을 가진 단체로 의심됩니다. 이는 1950년 10월 12일 언커크준비위의 '유엔사'로의 점령통치권위임에서부터 이미 노정된 것입니다. '유엔사'의 목적은 최근까지의 미군변형점령의 관행으로 비추어 북한지역 점령시 정부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영토에서의 정부참칭에 해당합니다.

'국가변란목적'

다수설에 의하면 공산정권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국가변란은 성립하며 국가변란을 실행하지 않아도 그 목적만 확인되면 국가변란을 목적하는 단체로서 반국가단체가 됩니다. '유엔사'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기구이고 한국정부의 통치권행사를 일부영토에서 제약함으로서 전복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공산정권이나 군주정은 아니라도 미국정부의 행정수립을 『유엔사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변란목적에 해당합니다.

'국내외단체'

'유엔사'는 국외단체이기에 내란죄의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국내만이 아니라 국내외단체를 포함하므로 '유엔사'는 국가보안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혐의 중에서 검찰이 가장 집요하게 추궁한 것이 유엔사령부문제였습니다. 그러

나 저는 이에 대해 완전무죄를 받았고 이젠 거꾸로 유엔사의 반국가단체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정작 주목해야할 반국가활동은 눈감은 채 정적제거용으로 악용되어왔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유엔사의 반국가단체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청문제입니다.
검찰기록에서 4년 동안 전화와 이메일 등이 도청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RO사건에서 조직원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로 통화했다는 사실을 들어 반국가단체원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면 도청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반국가단체원으로 의심합니다.
감시받는 핸드폰, 전자메일에도 불구하고 감시력보다 더 활발한 소통의 힘으로 시민들은 불의한 권력자를 탄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수를 감시할 순 있지만 전부를 감시할 순 없습니다. 감시하던 자를 감시하는 것이 감시권력으로부터 해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됨을 보여줍니다. 누가 자기를 지켜보더라도 떳떳한 윤리적 자아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수를 감시하는 권력을 다수가 감시하는 것이, 그런 사회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작동을 약화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표현의 자유문제입니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한국문화의 비약적 성장에는 권력에 대한 수준 높은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예술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신 쟁취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예술은 아직도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흔하디 흔한 CIA비판이나 군사기밀 같은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군사기밀, 주한미군 등을 주제로 한 K-컬처라는 것은 없습니다. 군사기밀과 관련한 저의 사진들이 모두 무죄를 받은 것은 이미 국가기관들의 홈페이지나 홍보물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입니다. 편파적인 내로남불이 증명된 것입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고소고발은 사과도 없이 마무리되지만 한 명의 예술가에 대한 고소고발은 수년의 직접적인 피해와 더 오랜 기간의 정신적 피해, 자기감시와 자기검열이라는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무죄를 받았음에도 국가보안법사건에서 문제된 사진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이 비겁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종종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술가로서 가장 부끄러운 것 중의 하나가 피해의식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분명한 사실은 그 사건이후로 그 때의 작업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감시와 자기검열이란 권력이 요구하는 규율을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항상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시하는 '시선'이라는 기능만 작동하면 됩니다. 권력으로서는 저비용으로 개인들을 통제할 수 있어 효율적일 것입니다. 예술가가 저렴한 권력장치에 놀아난다거나 내면화시킨다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창작행위라고 하지만 창작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검열로

너무나 많은 고뇌와 번민을 해야하는 예술가에겐 창작이 더 이상 자유롭지도, 더 이상 행복하지도 않은 고비용의 행위가 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역대 정부의 예술정책에 대해 지원 따위는 필요 없으니 탄압만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권력폭압장치가 온존하는 상황에서는 지원자체가 간섭입니다. 누구를 지원할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미 간섭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네 번째로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을 약속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는 헛공약입니다.

결론

저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정부가 아닌 노무현정부 시기였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공약한 대통령하에서 국가보안법폐지에 실패하고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소재거리로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도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머뭇거렸습니다. 이재명정부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야겠습니다.